

탄소흡수원장학금(연구활동진흥비) 지급 내규

<산림청 지정 고려대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제 정 : 2021. 12. 20.

1차 개정 : 2022. 04. 29.

2차 개정 : 2023. 05. 03.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의 연구 활동 진흥을 위한 산림청 지정 고려대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고려대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 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연구 전 분야에 관심 있는 자.
3.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
4. 4대보험 가입자.

제3조 (장학금 신청서류) 탄소흡수원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탄소흡수원장학금 신청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제4조 (장학생 선발) ① 고려대학교 탄소흡수원 장학위원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 그밖에 장학기금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액은 사업비(학기 당 4,000만원 내외)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선발인원 : 총 5년간(2021년~2025년) 매 학기 탄소흡수원 특성화 과정 지원 학생 n명 선발
2. 장학금액 : 1명 기준, 약 40,000,000원 ÷ n(명)의 금액 지원
(탄소흡수원장학금은 수업료 범위와 관계없이 이중 수혜를 허용한다.)

② 학과주임(또는 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금 범위 내에서 지급 인원, 장학금액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결과물 제출) 장학생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탄소흡수원 분야 연구 활동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1. 휴학·수료 및 제적자
2. 학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본 장학금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학생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자격의 박탈 및 반납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제7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 학기에 중도 휴학,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